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지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8년04월0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강**	강** 2000-07-07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길	재등록
박**	박** 1955-06-16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길	재등록
박**	박** 1965-03-20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	재등록
박**	박** 1968-12-16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서부해안로	재등록
박**	박** 1990-03-06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칠리로	재등록
박**	박** 1991-12-22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칠리로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윤순애 문의전화 : 061-540-6773)

2018년 03월 26일

지산면장 